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62,008,589	10,860,258
일반회계		347,889,493	10,436,685
특별회계		14,119,096	423,573
기타특별회계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1,165,822	34,975
	농공지구조성및관리특별회계	2,188,200	65,646
	주차장운영특별회계	1,117,610	33,528
	공영터미널운영및관리특별회계	150,992	4,530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66,220	1,987
	드림빌특별회계	2,787,735	83,632
	건축진흥특별회계	135,000	4,050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1,135,960	34,079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371,557	161,147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591,113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